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378호 2018. 8. 13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6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2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-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폐지 고시 ----- 4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67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 ----- 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----- 9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06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시행령 제38조(하천점용허가의 고시)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8. 13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 : 공촌천(지방하천)
가. 허가 번호 : 제2018 - 02호
나. 허가년월일 : 2018. 8. 8.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인천도시가스(주)
나. 주 소 : 인천 서구 백범로 ***번길 **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도시가스관 매설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인천 서구 연희동 428-239번지 외 2필지
나. 면 적 : 56.16m²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18. 9. 21. ~ 2023. 9. 20.(5년)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07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8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드림로 299 외 20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도 열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08. 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08호
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

『주택법』 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8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명 : 마전동 마전지구 17블록 2로트 외 4 필지 공동주택(아파트) 신축
2. 사업주체 :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치 :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7블록 2로트 외 4 필지
 - 나. 대지면적 : 23,841㎡
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75,747.4339㎡(지하 3층, 지상 18층)
 - 라. 용도 : 공동주택 7개동(아파트 545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4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09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5,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8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가. 고 시 일 : 2018.08.1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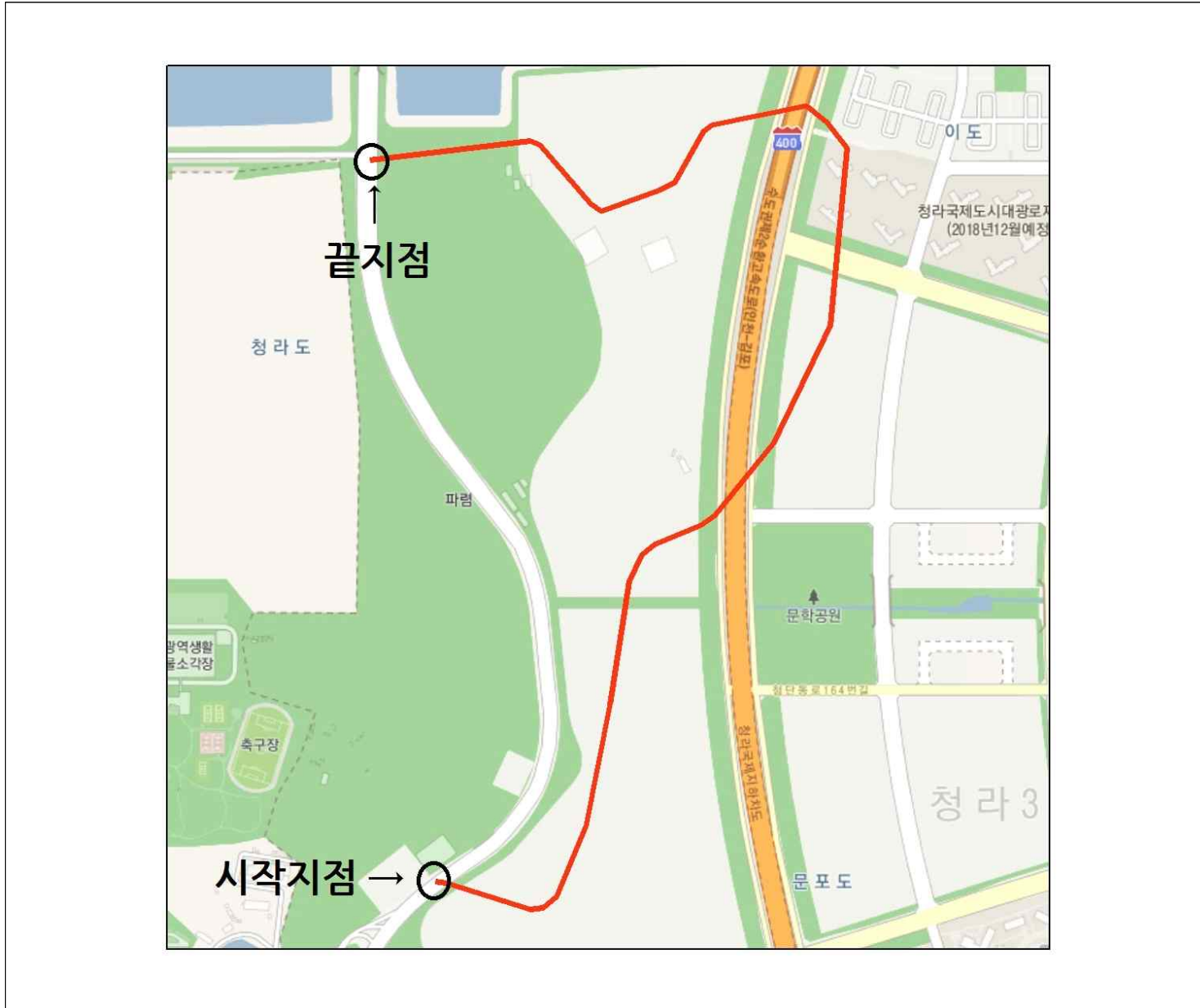
나. 고시방법 : 홈페이지 및 구보

다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(붙임 참조)

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현황도

구분	도로 위계	도로명	행정 구역	도 로 구 간						도로구간 변경 사유
				시 점	종 점	기초구간	길이(m)	폭(m)	기초간격(m)	
도로구간 폐지	길	로봇랜드로268번길	청라3동	청라동 1-724	청라동 1-676	1→239	2,383	20	20	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폐지

※ 현황도면

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167호

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

2018년도 제5차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한 「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」 과 관련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재결신청 사항이 송달되지 못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8. 8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고내용 :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사항 송달
2. 공고기간 : 2018.08.13.~08.27.(14일간)
3. 공고방법 :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구청계시판, 구 홈페이지
4. 공시송달 대상 : ‘붙임’ 참조
5. 근거법령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
6. 수령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4752)
7. 기타사항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
2018년 제5차 손실보상 재결 공시송달 대상자

사업명 :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

연번	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	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읍,면,동,리	지번	물건의 종류	성명	주소	성명	주소	내용	
1	경서동	249-95	XL1500 외	김진권 (보아애드)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456(경서동, 보아애드)				
2	경서동	124-54	컨테이너(사무실) 외	박석인 (태양중기)	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8, 204호(검암동, 서해프라자)				
3	경서동	124-27	영업권 외	서진유통㈜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496번안길 15(경서동, 서진유통)	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00	근저당	
4	경서동	249-61	매실나무 외	이정분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34, 301호(경서동, 정상빌딩)				
5	경서동	249-148	앵글 외	전표성 (삼원테크)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-148 (삼원테크)				
6	경서동	249-95	컨테이너 외	서일종합건설㈜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456(경서동, 서일종합건설)				
합 계				6명				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179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합니다.

2018. 8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『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』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지만 납부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재까지 존치·운영함.
-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(건축허가 취소 시 부담금 환급) 대상이 1건 밖에 존재하지 않아, 특별회계로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함.

2. 주요내용

-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토지정보과, 전화 032-560-4842, 팩스 032-560-2787)에게 제
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(안) 1부.

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『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』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지만 납부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재까지 존치·운영함.
-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(건축허가 취소 시 부담금 환급) 대상이 1건 밖에 존재하지 않아, 특별회계로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함.

2. 주요내용

-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폐 지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없음”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승계
- 라. 관계 법령 발췌 : “별지 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

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

②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잔액은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

[시행 2008. 3. 28] [법률 제9051호, 2008. 3. 28, 폐지]
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9051호, 2008. 3. 28.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,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.

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, 제34조제1항제15호, 같은 조 제2항제3호, 제35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